

Real Democracy, Political and Media Dividends for Sovereign*

Jeongim Kwon** & Nowan Kwack***

Abstract: This article critically studies Nam Hoon Kang's project of real democracy and political and media dividends for the sovereign as a part of the former, with the research on a philosophical background of the project, i.e., the political philosophy of Aristotle. Through this, it shows that his project of real democracy will provide the economic basis of democracy based on the realization of the distributive justice represented by basic income, and that his project of real democracy develops into a project to develop or improve democratic institutions and policies to really represent the opinion of people. His policy of political and media dividends for the sovereign is an example. Subsequently, this article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basic income and Nam Hoon Kang's political and media dividends and the conditions of real democracy that Aristotle suggests. As a result, this article shows, on the one hand, that the basic income provides with the just economic basis that enables real democracy that Aristotle suggests. On the other hand, it suggests that Nam Hoon Kang's project of the political and media dividends needs to be transformed into a political and media subsidy system combined with participation income. The specific design will be a future study.

Key Words: Political and Media Dividends, Real Democracy, Basic Income, Basic Income in Kind, Aristotle

실질적 민주주의와 주권자 정치·언론 배당

권정임·곽노완

요약: 이 글은 강남훈의 실질적 민주주의 기획 및 그 일부로서의 주권자 정치·언론 배당 기획을 그 철학적 배경의 하나인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철학에 연계하여 비판적으로 연구한다. 이를 통해 그의 실질적 민주주의 기획이 기본소득으로 대변되는 분배정의의 실현에 기초하여 민주주의의 경제적 기초를 마련하면서, 이에 기반하여 정치·언론 배당 정책처럼 민의를 보다 실질적으로 대변하는 민주주의 제도와 정책을 개발 또는 개선하려는 기획임을 보인다. 이어서 이 글은 기본소득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시사하는 실질적 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하는 정의로운 경제적 기초를 제공함을 보인다. 다른 한편 이 글은 강남훈의 정치·언론 배당 기획이 참여소득과 결합된 정치·언론 지원금 제도로 변형될 필요가 있음을 보인다. 이는 차후과제다.

핵심어: 정치·언론 배당, 실질적 민주주의, 기본소득, 현물 기본소득, 아리스토텔레스

□ 접수일: 2020년 6월 8일, 수정일: 2020년 6월 25일, 게재확정일: 2020년 6월 28일

*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 - 2017S1A3A2066659).

** 주저자, 한신대학교 연구교수

(First Author, Professor, Hanshin Univ., Email: blauerhimmel1@daum.net)

*** 교신저자, 한신대학교 산학협력교수

(Corresponding Author, Professor, Hanshin Univ., Email: kwacks79@hanmail.net)

I. 들어가며

근대 이후 민주주의는 ‘자유’와 ‘평등’으로 대변되는 기본권의 보장을 핵심으로 하는 ‘헌정주의’와 결합하면서, 무엇보다 독재 권력에 대한 제어장치로 기능했다.¹⁾ 그렇지만 이후의 발전과정에서 민주주의가 ‘인민(demos)의 자기 통치(crazy)’, 곧 ‘자치’라는 자신의 이념에 부합하는 정치체제로 발전해 갔다고 보기는 어렵다.²⁾ 오히려 민주주의는 집단적 의사결정과 관련되는 순전히 형식적인 절차, 곧 “자유로운 투표, 보통선거 및 다수결 원칙의 결합”(Van Parijs, 2011: 7)으로 이루어지는 “집단적 의사결정형태”(Van Parijs, 2011: 1)로 축소되는 경향을 보인다. 즉 ‘형식적 민주주의’로 축소되는 경향을 보인다.

민주주의의 이러한 형식화는 ‘자본’으로 대변되는 경제적 권력이 엄청난 비용을 들인 선거전과 홍보 등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황을 만드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그 결과 경제적 권력이 민주주의를 ‘포획’(capture)(Acemoglu et al., 2014: 1895)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 자체 대자본인 거대 언론이 자본에 유리하게 여론을 형성한다는 사실은 사태를 더욱 심각하게 한다.

이러한 민주주의 포획에 대항하기 위한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대별된다. 첫 번째는 비례대표제나 심의 민주주의의 도입 등과 같이, 민주주의 제도와 절차가 민의를 보다 충실하게 대변하도록 개선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민주주의의 포획을 가능하게 하는 경제적 자원의 불평등을 완화·해소하는 것이다. 정치·언론 지원금 제도의 개선을 통해 자본의 경제적 권력이 정치와 언론에 미치는 영향력을 약화 내지 무력화시키고자 하는 시도는 그 한 예라고 하겠다.

정치·언론 지원금 제도의 개선과 관련하여 2000년대 들어 애커만·아이레스(Ackerman & Ayres, 2002), 양(Andrew Yang) 등이 제안한 정치 바우처 제도 및 맥체스니·니콜스(McChesney & Nichols, 2010) 등이 제안한 언론 바우처 제도는 특히 주목을 끈다.³⁾ 제도설계와 관련한 구체적인 차이들을 사상할 때, 이 정치·언론 바우처 제안들은 다음과 같은 공통적인 특징을 갖는다.

첫째, 이 제안들은 민주화를 진작하기 위해 정부가 정치인과 언론에 공적인 지원금을 지

1) 이에 대한 상세한 고찰을 위해서는 권정임·강남훈(2019: 17-25)을 참조하라.

2) ‘자치’로서의 민주주의 이념에 대해서는 헬드(2016: 490); 권정임·강남훈(2019: 17-18)을 참조하라.

3) 바우처란 특정 용처에 대해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불 보증서다.

급하자는 제안이다. 둘째, 이 제안들에 따르면 정부가 지원금을 정치인이나 언론이 아니라 성인 국민 전체에게 바우처의 형태로 지급한다. 국민들은 원하는 정치인과 언론사를 이 바우처로 후원한다. 셋째, 따라서 이 제안들에 따를 때 정치인과 언론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정부의 간섭과 자본을 비롯한 거대 경제적 권력의 영향을 벗어나 전체 성인 국민에 의해 평등하게 이루어지게 된다. 이런 측면에서 이 제안들은 형식적 민주주의의 한계를 돌파하고자 하는 ‘민주주의 바우처’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강남훈이 한편에서는 정치·언론 바우처 제안들의 이 공통적 설계와 내용을 이어받고, 다른 한편에서는 이를 기본소득론에 연계하여 ‘주권자 정치배당’과 ‘주권자 언론배당’이라는 형태로 제안하고 있다(강남훈, 2019). 이 글은 강남훈이 그의 실질적 민주주의 기획의 일환으로 제기하는 주권자 정치·언론 배당 기획을 비판적으로 연구하여 그 의의를 계승하는 동시에 그 한계를 비판하고자 한다. 또한 이에 기초하여 그의 정치·언론 배당 기획을 비판적으로 변형하고자 한다.

II. 주권자 정치·언론 배당

강남훈이 주권자 정치·언론배당을 제안하게 되는 직접적인 문제의식은 많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난한 서민들이 다수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불평등을 시정하는 정책이 제대로 채택·실현되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모순을 설명하기 위해 그는 애쓰모글루(Acemoglu) 등을 따라 민주주의의 ‘포획’에 주목한다(강남훈, 2019: 25). 또한 부자 지배 엘리트가 민주주의의 포획에 성공하면 민주주의적 절차의 유지나 확대에도 불구하고 재분배가 확대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재분배를 확대하는 제도의 도입 자체가 막히거나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그 효과가 무력화되기 때문이다(Acemoglu et al., 2014: 1895). 다른 한편 오늘날 민주주의가 많은 국가에서 사실상 집단적 의사결정을 위한 형식적 절차로 축소된 형식적 민주주의라는 사실은 민주주의의 포획이 용이해지는 조건이 될 것이다.

강남훈 역시 유사한 문제의식 아래 ‘형식적 민주주의’⁴⁾의 한계를 넘어서는 ‘실질적 민주

4) 강남훈은 ‘형식적 민주주의’를 달(Dahl)의 ‘다원 민주주의’(polyarchal democracy)를 따라 다음과 같은 제도를 갖춘 민주주의로 제시한다. 즉 선출된 공직자, 자유롭고 공정하며 빈번한 선거, 표현의 자유, 선택의 여지가 있는 정보원, 결사의 자율성, 포용적 시민권을 갖춘 민주주의로 제시한다(강남훈, 2019: 28-29). 달에게서 ‘다원 민주주의’는 ‘이상적 민주주의’를 어느 정도 충족시키는 현실적인 민주주의다. 달의 ‘이상적 민주주의’는 구성원의 효과적 참여, 투표의 평등, 계

주의'를 주장한다. 또한 '형식적 민주주의'가 함축하는 민주주의의 형식적 요건의 준수를 전제로 실질적 민주주의의 세 조건으로, 정치(입법, 행정, 사법) 대리인들을 주권자 집단에 비례하여 배정할 것과 주권자의 계몽된 이해(강남훈, 2019: 33) 및 주요 정치적 자원(political resources)의 평등한 분배(강남훈, 2019: 30)를 제시한다. 이때 그는 아테네 민주주의의 전통 및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철학에 연계하여 실질적 민주주의를 위해 특히 '정치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강남훈, 2019: 39-40).

강남훈의 주권자 정치·언론배당 제안은 그가 제시하는 실질적 민주주의의 세 조건 중에서 주요 정치적 자원의 평등한 분배와 관련된다. '정치적 자원'이란 그가 달에게서 차용하는 개념으로, "다른 사람의 태도에 영향력을 발휘하는 데 사용하기 위하여 접근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의미한다(강남훈, 2019: 29). 달에게서 정치적 자원은 돈·자산과 물리적 강제력·무기에서 선거, 명예와 존경, 애정 등까지 다른 사람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거의 모든 요소들을 망라한다(강남훈, 2019: 29). 그러나 강남훈은 이 모든 정치적 자원들을 평등하게 분배하는 것은 명예와 존경의 경우로 예시할 수 있듯이 불가능하다고 본다. 또한 그는 소득의 경우로 예시할 수 있듯이 경제적으로도 이는 비효율적이라고 본다. 소득을 완전히 평등하게 분배하면 아무도 일하려 하지 않으리라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평등하게 분배해야 할 정치적 자원의 범위를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자원으로 한정할 것을 제안한다(강남훈, 2019: 30).

실질적 민주주의를 위해, 특히 '정치 참여'(이하 '참여')를 중요하게 보는 자신의 관점에 따라, 강남훈은 참여를 위해 필요한 정치적 자원을 평등하게 분배해야 할 '주요 정치적 자원'의 하나로 설정한다. 대의 민주주의라는 우리나라의 정치 현실에 걸맞게, 그에게서 일반 국민의 정치적 참여⁵⁾와 이를 위한 정치적 자원은 사실상 두 종류로 세분된다. 참여의 두 유형부터 살펴보자.

첫 번째는 국민들이 "대리인을 제대로 선출"하기 위해 "대리인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토론"(강남훈, 2019: 40)하는 유형의 참여다. 이런 측면에서 첫 번째 유형의 참여는 일상 생활에서 정치와 관련하여 관심을 갖고 숙고·토론하는 '일상적인 참여'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정치적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참여다. 대의 민주주의 체제에서 일반국민은 이러한 정치적 의사결정과정에 대체로 '대리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참여한다. 그런데 이러한 간접적 참여로 인해 "주인-대리인(principal-agent) 문제", 즉 "대리인과 주인의 목표가 달

목적 이해, 의제의 통제, 모든 성인의 포용이라는 5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민주주의다(강남훈, 2019: 28).

5) 강남훈은 이 부분에서 '공직자로서의 참여'는 배제하고 있다. 이러한 배제를 표현하기 위해 이 글에서는 이때의 참여를 '일반 국민의 정치적 참여'라고 한정하였다.

라서 대리인이 주인의 뜻에 따르지 않는 문제”(강남훈, 2019: 41)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주권자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면 할수록 대리인에게도 이익이 되는 유인체계”(강남훈, 2019: 41)를 만들 필요가 있다.

강남훈의 주권자 정치·언론배당은 이 두 번째 종류의 참여를 실질적 민주주의적인 참여로 만들기 위해 모든 성인 국민에게 평등하게 배당되는 정치적 자원이다. 이 두 번째 종류의 참여에 연계된 대리인의 선출 및 이와 관련된 언론의 역할과 영향력을 고려할 때, 실질적 민주주의를 위해 그가 언론배당 또는 언론 바우처를 함께 제안한다는 사실이 설득력을 지닌다.

주권자 정치배당이란 18세 이상의 모든 성인에게 1년에 10만원씩 지급되는 정치배당금이다. 정치배당금은 정치인과 정당의 후원에만 사용되며, 미사용분은 국고에 귀속된다. 공직 선거가 있는 해에는 금액을 5만원에서 10만원 사이로 인상한다. 후원은 선관위 정치후원금 사이트를 통해 익명으로 이루어지며, 자기 돈으로 추가 후원하는 것도 가능하다.⁶⁾

주권자 정치배당은 현존하는 ‘정치후원금 세액공제 제도’를 확장하면서 그 약점을 해결한 형태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 제도는 소득세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 신고를 하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들을 차별한다. 나아가 정치신인을 차별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강남훈, 2019: 135).

주권자 언론배당 역시 모든 성인에게 지급되며 언론기사 후원에만 사용할 수 있다.⁷⁾

결국 강남훈의 주권자 정치·언론 배당은 그의 두 번째 유형의 참여, 곧 정치적 의사결정에 대한 참여를 모든 주권자들에게 실질적으로 평등하게 보장하기 위해, 공적으로 정치적 자원을 마련하여 이를 주권자들에게 배당하고자 하는 제안으로 요약된다. 이 제안을 따를 경우, 정치인과 언론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정부의 간섭과 자본을 비롯한 거대 권력의 영향을 벗어나 전체 성인 국민에 의해 비교적 평등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이를 비롯한 제도의 기본적인 설계방식에서 정치·언론 배당에 대한 그의 제안은 앞에서 소개한 정치·언론 바우처 제안들의 공동 특징을 공유한다.

그런데 강남훈은 자신의 주권자 정치·언론 배당을 “공동선 기본소득”(강남훈, 2019: 14)이라고 부르면서 기본소득론에 연계함으로써 자신의 제안과 선행하는 민주주의 바우처 제안들과의 차이점을 드러낸다. 그에게서 ‘공동선 기본소득’이란 “공동선 참여”, 즉 공동선이 무엇인지를 결정하기 위한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기본소득”(강남훈, 2019: 42)이다. 동시에 그는 “공동선이 무엇인지 결정하기 위해서는 정치에 참여해야 하므로, 정치(참여) 자체를 공동선으로” 본다(강남훈, 2019: 41-42). 요약

6) 주권자 정치배당의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강남훈(2019: 142-144)을 참조하라.

7) 주권자 언론배당의 설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강남훈(2019: 170-175)을 참조하라.

하자면 그에게 공동선 기본소득이란 ‘참여’라는 공동선을 모든 성인에게 실질적으로 평등하게 보장하기 위한 기본소득이다. 물론 이때의 ‘참여’는 대의제 민주주의를 배경으로 대리인의 선출에 기초하여 ‘간접적으로’ 행해진다.

그런데 실질적 민주주의를 위한 그의 제안과 기본소득과의 연관성은 그가 주권자 정치·언론 배당을 기본소득으로 본다는 점으로 한정되지 않는다. 그가 제시하고 있는 참여의 첫 번째 유형, 곧 정치에 대한 관심과 숙고 및 토론을 의미하는 ‘일상적인 참여’를 위해 필요한 “여유”(강남훈, 2019: 40)를 위한 정치적 자원으로 그가 기본소득을 제시하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그의 실질적 민주주의 기획에서는 기본소득의 도입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이를 고려할 때, 또한 기본소득이 전 국민이 공유하는 공유지(communs) 수익⁸⁾, 곧 공동부에 대한 정의로운 배당임을 고려할 때(권정임·곽노완·강남훈, 2020), 실질적 민주주의에 대한 그의 기획은 무엇보다 분배정의에 기초하고 있다. 즉 그의 실질적 민주주의 기획은 분배정의에 기초하여 ‘포획’에 대항하는 민주주의의 경제적 기초를 마련함과 아울러, 이에 기반하여 민의를 보다 실질적으로 대변하도록 민주주의 제도와 정책을 개발 또는 개선하려는 기획이다. 그의 주권자 정치·언론 배당정책은 이러한 제도 또는 정책의 한 사례다.

그런데 강남훈은 공유지 수익에 대한 무조건적·보편적·개별적이며 정기적인 배당으로서의 기본소득을 “공동부(common wealth) 기본소득”(강남훈, 2019: 14)으로 범주화하여 공동선 기본소득과 구분한다. 나아가 그에게서는 공동선 기본소득이 현물 기본소득(basic income in kind)의 한 유형이라는 점도 공동부 기본소득과의 차이점이다. 그에 따르면 주권자 정치·언론배당은 “사용처가 제한된 현금”, 곧 “바우처”라는 측면에서 현물 형태로 지급되는 기본소득, 곧 “현물 기본소득”(강남훈, 2019: 42)이다. 그런데 그는 비례대표 선거제라는 특정한 민주주의적 정치제도 또한 공동선 기본소득에 속하는 현물 기본소득으로 본다. 비례대표 선거제도제가 실시될 때, 유권자의 표가 그들을 대리하여 정치적 의사결정에 ‘참여’할 정치인의 선출에 버려지는 표 없이 반영된다는 점에서 그가 비례대표 선거제를 공동선 기본소득의 하나로 보는 점은 적어도 그의 이론체계에서는 합당하다. 그런데 그의 주권자 정치·언론 배당 또한 민주주의적 정치제도의 특정한 형태, 곧 바우처 형태로 운영되는 정치·언론 지원금 제도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강남훈이 공동선 기본소득으로 제시하는 두 종류의 현물 기본소득은 민주주의적 ‘정치제도’ 형태를 취한다는 공통점과 일관성을 갖는다.

그러나 주권자 정치·언론배당을 기본소득의 한 유형으로 보는 것은 일련의 문제를 제기

8) 공유지란 자연자원이나 인공지능의 개발을 위한 데이터 등과 같이 자연적·사회적으로 물려받거나 원칙적으로 공동체 성원 모두가 자원과 재화다.

한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참여를 위한 정치제도를 현물 기본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다. 이에 대해 답하기 위해서는 기본소득과 현물 기본소득에 대한 보다 상세한 논의가 필요하다. 나아가 공동선이란 무엇이며, 참여를 과연 공동선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따라서 다음 장에서는 이들에 대한 논의에 기초하여 주권자 정치·언론 배당 기획을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이 기획이 연계하고 있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철학을 중심으로 공동선과 참여에 대해, 그리고 민주주의가 가장 좋은 체제이기 위한 조건들에 대해 논의한다. 이어서 현물 기본소득을 중심으로 기본소득에 대해 논의한다.

III. 실질적 민주주의의 조건들과 기본소득

1. 실질적 민주주의의 조건들: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을 중심으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은 이러한 아테네 민주주의에 대한 체계적인 반성과 숙고의 산물이기도 하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염두에 두는 가장 바람직한 정치체제가 어떤 체제인가 하는 문제는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다(김재홍, 2018: 48).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아테네 민주정치에 대한 성찰을 배경으로 민주주의를 비롯한 다양한 정치체제들에 대해 근본적으로 연구함으로써, 그가 『정치학』에서 민주주의가 가장 좋은 정치체제일 수 있는 가능성을 보이면서 그 조건도 제시한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살펴보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정치체제들의 바람직함을 판단하는 기준은 두 가지다.

첫 번째 기준은 “정치적 좋음”, 곧 “공동의 이익”으로서의 “정의”(Aristotels, 2017: 1282b18-19)다. 이는 “정치체제의 옳고 그름을 가리는 기준”(김재홍, 2018: 134)이다. 이 기준과 지배자의 수에 따라 그는 여섯 가지 정치체제를 분류한다. 즉 한 사람이 공동이익을 위해 지배하면 왕정, 사익을 위해 지배하면 폭군정으로 분류한다. 또한 소수가 공동이익을 위해 지배하면 귀족정, 사익을 위해 지배하면 과두정으로 분류한다. 마지막으로 다수가 공동이익을 위해 지배하면 혼합정으로, 사익을 위해 지배하면 민주정으로 분류한다. 그런데 이 첫 번째 기준으로는 정의로운 세 정치체제 중에서 어떤 체제가 더 좋은지 판단할 수 없다. 이 판단은 두 번째 기준에 기초한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정치체제들의 좋음을 판단하는 두 번째 기준은, 목적론적인 그의 철학에 걸맞게, 국가라는 정치 공동체의 목표다. 그에게 폴리스, 곧 국가의 목적은 시민들이

“잘 사는 것”(Aristotels, 2017: 1280b38-39)이다.⁹⁾ 그의 윤리학에 따를 때 ‘잘 사는 것’이란 시민들이 자신들의 잠재된 ‘탁월성’(덕)을 계발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다. 이는 그에게서 국가가, 시민들의 ‘생존’이라는 차원을 넘어서서,¹⁰⁾ 모든 개별적 시민들의 ‘좋은 삶’이라는 의미에서 ‘공동의 좋음(공동선)’을 목표하는 정치 공동체임을 의미한다.

“최선의 정치체제는 필연적으로 누구든지 그것에 따라 어떤 방식이든 간에 최선으로 행동할 수 있으며 축복받고(makarios) 살 수 있는 조직(질서, taxis)임은 명백하다”(Aristotels, 2017: 1324a23-25)(강조는 인용자).¹¹⁾

흥미로운 점은 정치 공동체의 목적, 곧 ‘공동선’이라는 기준에 기초하여 아리스토텔레스가 사실상 ‘소수’가 아니라 ‘다수’가 지배하는 체제를 더 좋은 체제로 본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살펴보자.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 정의로운 정치체제는 세 가지, 즉 왕정과 귀족정 및 혼합정이다. 『정치학』 3권의 마지막 장인 18장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가장 좋은 정치체제로 왕정이나 귀족정을 제시하는 듯이 보인다(Aristotels, 2017: 1288a33-35). 그러나 4권에서 “현실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차선의 정체”(박성우, 2009: 34)를 논하면서, 그는 이 정체를 “과두정과 민주정의 혼합”(Aristotels, 2017: 1293b35) 또는 “부자와 가난한 자”의 “혼합”(Aristoteles, 2017: 1294a 22-23), 곧 혼합정으로 제시한다. 다른 한편 7권과 8권에서는 “이상에 따라” “우리가 장차 세우려고 하는 폴리스”(Aristotels, 2017: 1325b35-36), 곧 “이상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최선의 정체”(박성우, 2004: 34)로 모든 개별적 “시민들 각자가 훌륭”하며 이 “모든 시민들이 정치체제에 참여”하는 체제(Aristotels, 2017: 1332a34-39), “비슷한 사람들이 번갈아가며 [관직을] 맡는”(Aristotels, 2017: 1325b7-8) 체제를 제시한다. 모든 시민들의 탁월성이 전제된다는 점을 제외할 때, 이는 그가 민주정으로 여기는 체제와 원리적으로 동일하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민주정은 그 “근본원리”, 곧 모든 시민들의 “자유”(Aristotels, 2017: 1317a40)에 기초하여, “번갈아가며 지배하고 지배받는”(Aristotels, 2017: 1317b1-2) 체제, 따라서 “그 누구에게도 지배받지 않”고 “원하는 대로 사는” 체제(Aristotels, 2017: 1317b12-16)다. 요약하자면 모든 시민이 자유롭게 평등하게 참여하여 운영하는 자치

9) 도시국가였던 고대 아테네 국민이란 곧 시민이다. 이런 맥락에서 이 부분에서 ‘시민’은 ‘국민’을 대체한다.

10)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 국가가 플라톤적인 국가관, 곧 생존의 방편으로서의 국가관을 넘어서는 점에 대한 상세한 고찰을 위해서는 전광석(2017: 6); 김재홍(2018: 54-57)을 참조하라.

11)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 공동선이 개별 시민들의 좋음보다 우위에 있는 전체로서의 폴리스의 좋음 이 아니라, 폴리스의 모든 개별적 시민들의 ‘좋은 삶’ 또는 ‘행복’이라는 점에 대해 보다 상세하게 고찰하기 위해서는 김재홍(2018: 134-137)을 참조하라.

체제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이상적 체제’가 모든 시민들이 탁월하고 또한 모든 시민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자치 체제라면, 현실적으로 가능한 ‘차선의 체제’는 혼합정이다. 비록 시민이 아테네 출신의 비노예 남성으로 제한되기는 하지만, 이 두 체제는 모두 다수 시민이 번갈아가며 평등하게 지배¹²⁾한다는 측면에서 현대적인 의미에서의 민주주의 체제다. 그는 ‘이상’과 ‘현실’ 모두에서 소수의 압도적으로 탁월한 자가 정의롭게 지배하는 체제, 곧 왕정이나 귀족정보다 다수 시민이 지배하는 민주주의 체제를 공동선에 더 잘 기여하는 좋은 정치체제로 본다.¹³⁾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처럼 다수 시민의 지배 또는 자치를 선호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즉 법의 지배, 곧 법치 및 집단지성에 대한 그의 신뢰 때문이다.¹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법치에만 기초하는 정치체제가 “최선의” 체제는 아니라고 본다(Aristotels, 2017: 1286a14-15). 법은 단지 보편적인 것만을 말할 뿐 개별적인 상황들에 대해서는 법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Aristotels, 2017: 1286a10-13). 따라서 그는 법을 통해서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들, 특히 시민적 삶과 관련되는 공동의 정치적 문제들에 대해서는 다수 시민의 “심의 능력”(박성우, 2009: 42)에 최고의 권위를 부여한다.¹⁵⁾

결국 아리스토텔레스는 법치를 기반으로 모든 시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정치에 참여하면서 집단지성을 발휘하는 사회를 좋은 정치 공동체로 본다. 이때 시민들 모두가 탁월하면 이상적인 최선의 정치 공동체고, 그렇지 못하다면 차선의 정치 공동체라는 것이다. 좋은 정치 공동체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러한 견해는 두 가지를 함축한다.

첫째는 시민들의 자치에 기초하는 체제, 곧 민주주의 체제는 이상적으로든, 현실적으로든 가장 좋은 체제일 수 있다. 둘째,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시민들의 자유롭고 평등한 참여와 정의와 이성에 기초하는 법치라는 두 조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이때 참여는 그에게서 개별 시민의 좋은 삶, 곧 행복한 삶을 위한 필수 조건이기도 하다. 그에 의하면 행복을 위해 요청되는 탁월함이 정치 공동체에서의 실천을 통해 형성되기 때문이다(Aristotels, 2007: 1103a31-1103b3). 결국 그에게서 정치 공동체의 발전과 개별 시민의 발전 또는 행복은

12) 이때의 ‘지배’의 의미는 적어도 아테네 ‘시민들’에 대해서는 ‘지배’보다 ‘통치’에 가깝다.

13) 오늘날 많은 학자들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상적 정치체제를 중우정과 구분되는 현대적인 의미에서의 민주주의 체제로 해석한다. 이에 대해서는 박성우(2009); 전광식(2017); 김재홍(2018)을 참조하라.

14) 이에 대해서는 박성우(2009); 김재홍(2018: 180-182)을 참조하라.

15) 아리스토텔레스의 민주주의를 법치 민주주의이자 심의 민주주의로 해석하는 입장에 대해서는 박성우(2009)를 참조하라.

‘참여’에 기초하여 선순환한다.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가 『정치학』에서 민주주의가 가장 좋은 정치체제일 수 있기 위해 제시하는 중요한 조건으로는 두 가지가 더 있다.¹⁶⁾ 이에 대해 살펴보자. 세 번째 조건은 시민들이 “재산” 또는 “충분한 자원”을 갖는 것이다(Aristotels, 2017: 1329a18-19). 그래야만 훌륭한 시민이 되기 위해 필요한 자질, 곧 “덕을 계발하기 위해”, 또한 “정치적인 활동을 위해” “필요”한 “여가”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Aristotels, 2017: 1329a1-2). 비록 시민 전체에 대해서는 아니지만, 이 조건은 현실적인 차선의 체제, 곧 혼합정에서도 요청된다. 즉 아리스토텔레스는 적절하고 알맞은 재산을 갖고 있는 중산층이 많아야 민주정과 과두정이 혼합된 혼합정이 들어설 수 있다고 본다. 그렇지 않을 경우 그는 극단적 민주정이나 과두정, 심지어 참주정이 들어설 여지가 많다고 본다(Aristotels, 2017: 1295b40-1296a8). 그가 참여에 따른 대가로서의 ‘참여소득’을 주장하는 이유도 이 세 번째 조건과 관련된다.

네 번째 조건은 『정치학』 7권과 8권에서 특히 강조되듯이 “공공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에 대한 돌봄”, 곧 공교육(Aristotels, 2017: 1337a: 25)이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좋은 삶이란 잠재된 탁월성을 계발하는 행복한 삶이다. 또한 그에게 국가는 모든 시민의 좋은 삶을 추구하는 정치 공동체다. 따라서 그는 각각의 시민이 잠재된 능력을 탁월하게 계발하여 행복하게 살기 위해, 또한 좋은 시민을 양성하기 위해 국가가 공교육을 제공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이 네 가지 조건이 충족된다면, 민주주의는 더 이상 집단적 의사결정의 형식적 절차로 환원되거나 쉽게 ‘포획’되지 않으면서 ‘자치’라는 이상에 가까워질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이 글에서는 이 조건들을 실질적 민주주의의 중요한 조건들로 해석한다.¹⁷⁾

그렇지만 이처럼 아리스토텔레스가 제시하는 최선의 정치체제를 위한 조건들을 이처럼 실질적 민주주의의 조건들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이론적 공백 하나를 해결해야 한다. 그것은 그가 모든 시민들이 어떻게 충분하면서도 정의로운 재산이나 재원을 가질 수 있는지

16) 아리스토텔레스는 ‘가장 좋은 체제’와 관련하여 인구나 영토의 규모 같은 다른 조건들도 논의한다. 그러나 이 조건들은 당대의 문명 수준과 도시국가라는 아테네의 특수성을 배경으로 논의되는 조건들이다. 또한 이들은 ‘민주주의’와 본질적으로 무관하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사상된다.

17) 그렇다고 해서 이 해석이 실질적 민주주의의 조건이 이 네 가지에 불과하다거나 이 네 가지 조건만 갖추어지면 실질적 민주주의가 성립된다는 주장을 함축하지는 않는다. 다른 한편 ‘주요 정치적 자원의 평등한 분배’ 외에 강남훈이 실질적 민주주의의 조건으로 제시한 나머지 두 가지, 곧 ‘주권자 집단에 비례하는 대리인들의 배정’과 ‘주권자의 계몽된 이해’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제시하는 네 조건 중 각각 첫 번째 및 네 번째 조건과 관련된다고 보인다. ‘주요 정치적 자원의 평등한 분배’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조건과 관련된다고 보인다.

에 대해 해명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 이론적 공백은 그의 이상적 정치체제를 현대적인 의미에서의 민주주의, 곧 원칙적으로 무산자를 비롯한 공동체의 전체 성원을 주권자로 보는 민주주의 체제로 확장하는 것을 어렵게 한다.

그런데 기본소득을 도입할 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나아가 아리스토텔레스가 제시하는 최선의 정치체제를 위한 네 가지 조건들 또한 잘 충족될 수 있다. 기본소득에 대해 살펴보자.

2. 기본소득과 현물 기본소득

공유지 수익에 대해 모두가 기본소득이라는 형태로 무조건적인 권리를 갖는 이유는 공유지가 자연적·사회적으로 물려받거나 원칙적으로 공동체 성원 모두가 창출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모든 성원의 '자유'와 '평등'을 인정하는 정치 공동체에서 모두는 실정법과 구분되는 원칙적인 차원에서 공유지와 공유지 수익을 평등하게 공유할 권리를 갖는다. 이를 수용할 때 위에서 언급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적 공백, 곧 모든 시민들이 충분한 재산이나 재원을 정의롭게 확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간과한다는 공백이 해결된다. 원칙적으로 기본소득의 액수는 생태적·경제적 지속가능성을 전제로 공유부에 해당하는 몫의 크기에 의해 정해진다. 공유부의 가치는 사적 부의 가치 보다 훨씬 크다.¹⁸⁾ 따라서 원칙대로 기본소득을 준다면 이는 '충분한' 기본소득, 곧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경우 공유부의 사유화가 축소 또는 중단됨으로써, 전반적으로 사회경제적 평등의 정도가 크게 높아질 것이다.¹⁹⁾

기본소득은 현금형태로도, 현물형태로도 지급될 수 있다. 현물 기본소득에 대해 체계적으로 논의한 대표적인 학자는 판 빠레이스다. 1995년에 출간된 『모두를 위한 실질적 자유(Real Freedom for All)』에 따르면 현물 기본소득은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분류된다.

첫 번째는 개인의 '안전'으로 대변되는 '형식적 자유'²⁰⁾의 보장을 위해 필요한 공적 기

18) 이미 2007년 기준으로도 미국의 공유부 총액은 사유재산 총액인 54조 달러를 넘어섰다(곽노완, 2016: 172-173).

19) 기본소득에 대한 보다 상세한 고찰을 위해서는 권정임·곽노완·강남훈(2020: 5장)을 참조하라.

20) 판 빠레이스에게 형식적 자유는 '자기소유권'과 '안전'으로 대변된다. 자유지상주의적인 '자기소유권' 개념은 그에게서 사실상 '노예가 되지 않을 권리'를 의미할 뿐이다. 또한 이는 그의 '개인적 주권'으로서의 자유개념을 통해서도 충분히 담보된다. 결국 그에게서 '자기소유권'은 무용하고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개념이다. 이에 대한 상세한 고찰을 위해서는 곽노완(2015: 117-123)을 참조하라.

관, 또는 이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다. 이는 경찰, 법원, 군대, 민방위 및 다양한 지역 수준에서 행해지는 적절한 집단적 의사 결정 기제(mechanism) 등으로 예시된다. 이들은 각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기 위한 수단을 제공하지 않지만, 그렇게 살 권리를 보장한다(Van Parijs, 1995: 42). 따라서 현금 기본소득의 형태로 주어질 수 없고, 현물 기본소득의 형태로 보편적·무조건적으로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판 빠레이스가 이 첫 번째 유형의 서비스를 현물 기본소득으로 보는 이유는 기본소득에 대한 그의 독특한 관념 때문이다. 이에 따르면 기본소득은 무엇보다 ‘자유의 평등한 보장’이라는 자유주의적 정의관에 기초하여 정당화된다(권정임·강남훈, 2019: 9). 모두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형식적 자유’만이 아니라, 자유의 수단과 통합된 실질적 자유가 기본소득을 통해 최소수혜자에게 가장 유리한 방식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²¹⁾ 결국 그에게 ‘자유’란 모든 개인에 대해 무조건적·보편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며 그 수단은 기본소득이다. 따라서 ‘형식적 자유’를 보장하는 공공 기관과 민주적인 의사 결정 기제도 기본소득, 그렇지만 현물 형태로 제공되는 기본소득이라는 것이다.

두 번째는 현물 기본소득으로 주어질 때, 즉 무상으로 주어지거나 또는 보조금이 주어질 때, 모두가 자유롭고 손쉽게 이용함으로써 양의 외부효과가 초래되는 서비스나 재화다. 이는 교육, 사회기반시설 등으로 예시된다(Van Parijs, 1995: 43).

세 번째는 개별적으로 현금을 통해 구입하는 경우보다 현물 기본소득으로 제공하는 것이 비용과 서비스 수준 모두에서 더 바람직한 경우다. 공해 규제를 통한 보다 맑은 공기 등으로 예시된다(Van Parijs, 1995: 44). 판더보와 함께 집필한 『기본소득』(Van Parijs & Vanderborght, 2017)에서 판 빠레이스는 ‘현물 기본소득’이 아니라 ‘공적으로 지원되는 현물 서비스’ 범주를 사용한다.²²⁾ 그렇지만 그는 『기본소득』에서 내용적으로는 1995년 저서에서의 ‘현물 기본소득’을 계승하고 있다. 이 저서에서 그는 개개인의 장기적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바람직한 서비스, 또한 건강하고 잘 교육받은 노동력과 시민 집단의 형성을 위해

21) 이 최소극대화 또는 차등의 원칙과 관련하여 판 빠레이스는 롤스의 영향을 보여준다. 다른 한편 그는 공유부에 기초하여 기본소득을 정당화하기도 한다. 이는 특히 판더보와 함께 저술한 『기본소득』 5장에서 두드러진다. 이런 측면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그의 정당화는 이중적이다. 이에 대해서는 권정임·곽노완(2019)를 참조하라.

22) 판 빠레이스가 이러한 변화를 보인 이유는 2016년 서울에서 열린 BIEN(Basic Income Earth Network) 주최 16차 국제 기본소득 학술대회에서 기본소득을 ‘현금’으로 제한하지는 다수의 권유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 대회에서 이러한 권유를 제안한 이유는 기본소득이 기존의 사회서비스를 축소하려 한다는 오해를 막기 위한 것이다. 그렇지만 ‘현물 기본소득’ 범주의 사용은 오히려 장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공유부의 적정 수준을 사회 서비스의 개선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오히려 사회 서비스의 업그레이드를 주장할 수도 있다.

중요한 서비스들은 현물로 지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또한 이런 서비스로 그는 1995년 저서에서와 유사하게 기초적인 건강보험, 보육과 교육, 안전하고 쾌적한 공공 공간 및 공공재들과 공공 서비스들을 예시한다(Van Parijs & Vanderborght, 2017: 13-14).

현물 기본소득에 대한 판 빠레이스의 이러한 논의를, 기본소득을 기본적으로 ‘자유의 평등한 보장’이 아니라 ‘공유지 수익의 배당’이라는 측면에서 정당화하는 관점²³⁾에서 비판적으로 재구성해 보자. 이 경우 현물 기본소득의 형태로 지급되는 것이 바람직한 재화나 서비스는 다음의 것들일 것이다. 즉 개인이 자기 몫의 기본소득을 통해 사적으로 구입하는 것보다 현물 기본소득의 형태로 지급되는 것이 더 저렴하거나 질적으로 우수한 대상일 것이다. 판 빠레이스가 제시한 현물 기본소득의 사례의 대부분은 이를 충족한다. 그렇지만 민주주의적인 의사결정 기제에 대해서는 동일한 논리가 적용된다고 보이지 않는다. 무엇보다 이러한 기제 또는 이 기제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사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IV. 결론: 실질적 민주주의의 조건들과 기본소득 및 참여소득

언급했듯이 기본소득은 아리스토텔레스가 간과하는 실질적 민주주의의 경제적 기초에 대한 문제를 해결한다. 이는 그가 시사하는 실질적 민주주의의 세 번째 조건을 기본소득이 전제 시민을 대상으로 충족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기본소득은 나머지 조건들도 잘 충족시킨다. 이에 대해 살펴보면 이 글을 마무리하자.

기본소득이란 정치 공동체 모든 성원의 ‘자유’와 ‘평등’에 기초하여 모두에게 지급되는 공유지 수익의 배당이다. 이는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공동체에서 모든 성원의 ‘자유’와 ‘평등’이 정치 공동체의 근본적 가치 또는 헌정적 가치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정치체제가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들의 자기통치, 곧 민주주의 이외의 것일 수 없음을 의미한다. 결국 기본소득이 지급되는 공동체의 정치체제는 모든 성원의 ‘자유’와 ‘평등’ 및 민주주의를 공동체의 근본적·헌정적 규범이자 질서로 인정하는 헌정 민주주의다. 이런 측면에서 기본소득과 연관되는 정치체제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민주주의가 가장 좋은 정치체제이기 위해 제시하

23) 이 관점에 따를 때 ‘자유의 평등한 보장’은 기본소득의 효과이지 기본소득을 정당화하는 궁극적 근거가 아니다. 기본소득이 기본적으로 특정한 자원·소득의 분배이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기본소득을 정당화하는 궁극적 근거는 자원·소득에 대한 분배정의다. 이에 대한 상세한 고찰을 위해서는 권정임·곽노완·강남훈(2020: 2장, 5장)을 참조하라.

는 두 번째 조건, 즉 ‘법치’를 충족한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분류하는 정치체제는 해당 정치체제의 기본 질서를 형성하는 근본 가치에 따른 분류이기도 하다. 이런 측면에서 그에게서 정치체제, 곧 폴리테이아(Politeia)는 “헌정질서”로 해석되기도 한다(박성우, 2009: 37). 결국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도 법치는 헌정주의에 기반하는 법치다.

네 번째 조건, 곧 아리스토텔레스가 강조하는 높은 수준의 공교육 역시 기본소득을 통해 가능해진다. 교육이 현물 기본소득의 형태로 제공될 때, 교육 서비스를 사적으로 구매하는 것 보다 질적으로 우수하며 바람직한 많은 양의 외부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나아가 기본소득은 시민의 자유롭고 평등한 정치 참여라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제시한 민주주의의 첫 번째 조건의 충족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 그런데 복잡한 대의 민주주의 체제에서 참여는 다음과 같이 분화된다.

첫 번째 종류는 직접 정계나 공직에 진출하는 것이다. 기본소득이 도입되면,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증대되고 생계문제로 인해 꿈을 접어야 하는 강제도 약화된다. 결국 기본소득은 이러한 직접적인 참여 기회를 보다 평등하게 한다. 현재 공직에 있는 자는 보수를 받는다. 이런 측면에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장한 ‘참여소득’은 이 유형의 참여에 대해서는 실현되고 있다.

두 번째 종류는 간접적·일상적 참여다. 이 역시 기본소득의 도입에 의해 강화된다.

세 번째 종류는 정치적 대리인의 선출 및 언론과 관련되는 참여다. 강남훈이 보여주듯이, 대리인을 통한 정치적 의사결정과정에서 대한 시민들의 간접적인 참여는 여타의 간접적·일상적 참여와 구분되는 특성을 갖는다. 즉 대리인이 자신을 선출한 유권자보다 ‘정치적 자원’을 제공하는 세력을 대변할 가능성이 있다. 이처럼 대리인이 정치적 자원을 지원하는 세력을 대변하는 경향은 현대 민주주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언론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이런 측면에서 정치적 대리인의 선출 및 언론과 관련되는 참여는 간접적·일상적 참여의 특수한 형태로 별도로 고찰할 필요가 있다.

강남훈의 주권자 정치·언론 배당 제안은 정치적 대리인과 언론이 자신을 지지하면서 지원금을 제공하는 주권자들을 대변하게 함으로써, 정치적 자원을 지원하는 경제적 권력으로 부터 민주주의를 해방시킬 수 있는 좋은 제도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정치·언론 지원금 제도의 특수한 형태이지 현물 기본소득이라고 볼 수는 없다. 비례대표 선거제 또한 보다 민주주의적인 선거제도이지 현물 기본소득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들이 개인이 자신의 소득으로 구매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나아가 비례대표 선거제나 정치·언론 배당을 현물 기본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면, 공적으로 지원되는

다른 모든 정치·언론제도들 역시 현물 기본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둘째, 이 제도들의 혜택이 보편적·무조건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사실 언론·정치 배당의 금전적인 혜택은 시민이 아니라 이들이 선출한 정치인과 언론이 누린다. 나아가 ‘참여’가 실질적으로 보다 평등해진다는 의미에서의 혜택도 보편적·무조건적이지 않다. 아리스토텔레스 또는 그와 유사한 철학을 수용하는 사람과 정치 공동체에 대해서는 ‘참여’가 모든 시민에게 필수적이며 그 자체 공동선이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보다 평등한 참여의 보장은 보편적인 수혜가 아니다. 결국 이 제도들은 현물 기본소득일 수 없다. 설령 현물 기본소득의 내포와 외연을 확장하여 공유부에서 재원을 조달하는 제도들을 현물 기본소득으로 간주함과 동시에 이 배당제도들이 전적으로 공유부를 재원으로 운영된다는 비현실적인 가정을 한다고 해도, 이 제도들은 현물 기본소득일 수 없다.

그런데 이처럼 현대 사회에서 ‘참여’가 모든 사람에게 필수적인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강남훈의 주권자 정치·언론 배당은 ‘참여소득’과 결합되어 실시될 필요가 있다. 참여소득과의 결합을 통해 광범한 시민들이 동참하지 않는다면, 이 배당제도는 많은 지지자나 회원들만 특정 정파들에게만 유리한 제도가 될 수도 있다. 나아가 언론배당의 경우, 이 제도는 기사를 읽고 분석·비교·선정하는 수고로움을 동반한다. 이때 참여소득은 이러한 수고에 대한 보상의 의미를 가질 수도 있을 것이다. 결국 강남훈의 기획은 참여소득과 결합된 정치·언론 지원금 또는 바우처 제도로 변형될 필요가 있다. 그가 제안하는 지원금을 정치·언론 지원을 위한 부분과 참여소득을 위한 부분으로 적절하게 분할한다면, 이는 쉽게 달성될 것이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설계는 향후의 연구 과제로 남긴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기본소득은 시민의 자유롭고 평등한 정치 참여라는 이 첫 번째 조건의 충족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현대 사회는 ‘참여’를 모든 시민의 필수적인 의무로 강제할 수 없다. 실질적 민주주의를 위해 필요한 ‘참여’에의 동기와 여건이 기본소득만으로 충분하지 못한 경우, 참여소득이 지급될 필요가 있다. 물론 이러한 필요성은 현금·현물 기본소득 수준의 증대를 비롯한 기본소득제의 발전, 나아가 이와 연계되는 사회 전반의 긍정적인 변화와 함께 감소해 갈 것이다.

【참고문헌】

- 강남훈(2019), 『기본소득과 정치 개혁. 모두를 위한 실질적 민주주의』, 과천: 진인진.
- 곽노완(2015), “실질적 자유지상주의 자유개념의 재구성”, 『철학연구』, 135: 115-149.
- 곽노완(2016), 『도시정의론과 공유도시』, 서울: 라움.
- 권정임·강남훈(2019), “정의로운 민주주의”, 『시대와 철학』, 30(1): 17-42.
- 권정임·곽노완·강남훈(2020), 『분배정의와 기본소득』(6월말 출간 예정), 과천: 진인진.
- 김재홍(2018), 『아리스토텔레스 정치학: 최선의 공동체를 위하여』, 파주: 쌤 앤 파커스.
- 데이비드 헬드(David Held) 저, 박찬표 옮김(2010), 『민주주의의 모델들』, 서울: 후마니타스.
- 박성우(2009), “윤리와 정치의 통합으로서의 법의 지배”, 『21세기정치학회보』, 19(3): 23-49.
-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s) 저, 이창우·김재홍·강상진 옮김(2007), 『니코마코스 윤리학』, 서울: 이제이북스.
-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s) 저, 김재홍 옮김(2017), 『정치학』, 서울: 도서출판 길.
- 전광석(2017),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의 민주정치의 이상”, 『대동철학회』, 79: 1-28.
- Acemoglu, D., Naidu, S., Restrepo, P., & J. Robinson(2014), “Democracy, Redistribution and Inequality”, Atkinson, A. & Bourguignon eds., 『Handbook of Income Distribution』, 2A-2B: 1886-1966.
- Ackerman, B. & I. Ayres(2002), 『Voting with Dollar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McChesney, R. & J. Nichols(2010), 『The Death and Life of American Journalism』, Philadelphia: Nation Books.
- Van Parijs, Ph.(1995), 『Real Freedom for All』,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Van Parijs, Ph.(2011), 『Just Democracy』, Essex: ECPR Press.
- Van Parijs, Ph. & Y. Vanderborght(2017), 『Basic Income』, Cambridge in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Press.